

# 『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조상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 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  
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  
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최근 카메라 기술의 발달 등으로 불법영상 촬영 및 유포  
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 
대두되고 있습니다.

특히 공공화장실과 모텔 등 숙박업, 목욕장 등 일상생활

속에서 이용이 빈번한 장소에서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바,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장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, 시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또한 뉴딜일자리로 운영되던 안심보안관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이를 신규 추진 예정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 
공중위생영업소를 정의에 추가하고 공중위생영업소의 점검 유도를 위한 사항, 안심보안관을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으로 변경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  
-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  
본 의원은 조례 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필요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  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